

의약 분업 ! 온 국민의 건강이 올라갑니다

1.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는 ?

■ 공휴일 · 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하여 병 · 의원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□ 의식 장애 □ 호흡 곤란 □ 혈관 손상 □ 소아 경련 □ 화상,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, 골절 · 외상 또는 탈골, 기타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
<42

2. 산재 · 자동차 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?

■ 그렇습니다. 산재 보험,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다.

3. 의료 보호 대상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요?

■ 그렇습니다. 의료 보호 대상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 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.

4. 보건소나 치과병원도 의약분업 대상입니까?

■ 그렇습니다. 모든 의료 기관(병원, 의원, 치과 병 · 의원, 보건소 등)은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.

5. 한의원(한방 병원)도 의약분업을 하나요?

■ 아닙니다. 한의원(한방 병원 포함)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.

6. 우리 읍에는 병원(또는 약국)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 · 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 · 어촌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같이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■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읍 · 면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시장 ·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■ 다만 예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 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성인 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하였고 예외 지역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한 “오 · 남용 우려 의약품”(예를 들면 비아그라)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· 판매하도록 했습니다.

7. 사업장 내 부속 의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?

■ 사업장 내 의무 시설(부속의원)을 별도의 의료 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됩니다.

■ 다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해 보건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 환자, 응급 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 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약할 수 있습니다.

8. 학교 내 양호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요?

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보건실(양호실)에서 학

교 의사, 학교 약사, 양호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으며, 대학의 보건실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9. 지금까지 받던 의료보험 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?

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 이전과 같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,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불편하지 않을까요?

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처방전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현행법상 처방 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정 기간의 처방전을 받으시면 됩니다.

11. 노인들도 병·의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?

■ 노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액으로 돌아오는 동안 FAX로 처방전을 동네 약국에 보내면 가족들이 대신 가져서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12. 대형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■ 대형 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.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면 동네 약국 또는 단골 약국과 즉시 연결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.

13. “단골 약국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?

■ 단골 약국은 “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 약국으로 지정·이용하도록 권장하

고, 당해 단골 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 관리, 투약지도, 중복 투약 점검 등 최선의 투약 서비스를 제공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■ 의료보험 카드에 단골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,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환자는 의뢰 진료 시 의약품 처방전을 자신의 단골 약국으로 FAX 또는 PC통신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4. 약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?

■ 약화사고의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이 잘못되면 의사에게, 조제가 잘못되면 약사에게, 유통 또는 제조 과정에서의 변질·변패 또는 품질 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 업소 또는 제조 업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■ 또한,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약학 사고는 약사 책임입니다.

①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·함량·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

②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끼워 판 경우

③ 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한 경우

④ 분량 또는 투약 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
⑤ 대체 조제 절차를 위반한 경우

⑥ 처방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방 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

15. 의약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■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 기간 중에 반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반납의 원인이 조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, 처방에 기인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서 각각 반납을 받되 환자가 약국에서 반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협의하면 됩니다. ■